

밀크와 크림 및 버터등 수입추천요령

'86년도 하반기 및 '87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총칙 제8조
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
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6년 6월 30일

한 국 유 가 공 협 회 장

- 다 음 -

1. 수입추천대상품목 및 추천기준 :

CCCN		품 목 명	추천대상품목	추천기준
0401	0000	밀크와 크림(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 건조 또는 감미를 첨가한것을 제외한다)	좌 동	1. 추천대상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. 추천범위 및 기준 • 유제품 원료 수급상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. 3. 구비서류 : 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...5부 나. 물품도매확약서 사본 ...1부
0402	0100	밀크와 크림(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것과 농축 건조 또는 감미를 첨가한것) 웨 이	좌 동	1. 추천대상자 가. 조제분유 원료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제분유 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.

CCCCN	품 목 명	추 천 대 상 품 목	추 천 기 준
			<p>나. 사료용은 사료관리법 제9 조의 규정에 의거 배합사료(대용유) 제조업허가를 득한자.</p> <p>2. 추천범위 및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제분유원료 및 사료 수급상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 <p>3. 구비서류:</p> <p>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...5부</p> <p>나.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...1부</p> <p>다. 수입물품 사용계획서 ...1부</p> <p>라. 관할 시도지사의 실수요자 및 소요량확인서 1부(조제분유원료)</p>
0201	가당한 탈지분유(웨이클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.5%이하의 것)	좌 동	<p>1. 추천대상자 범위 및 구비서류 CCCCN 0402-0100과동일함.</p>
0202	기타 탈지분유(웨이클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.5%이하의 것)	좌 동	<p>1. 추천대상자</p> <p>가. 공업용 카제인 제조원료는 공업용 카제인 제조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카제인 제조특허권자.</p> <p>나. 사료용은 사료관리법 제9 조의 규정에 의거. 배합사료(대용유) 제조업허가를 득한자.</p> <p>다. 우유수급조절용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가공협회</p> <p>2. 추천범위 및 기준</p> <p>유제품원료 및 사료수급상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.</p> <p>3. 구비서류</p> <p>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...5부</p> <p>나. 물품매도확약서사본... 1부</p>

C	C	C	N	품 목 명	추 천 대 상 품 목	추 천 기 준
		0299		탈지분유를 제외한 기타 밀크(웨이틀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 이 전 중량의 1.5%이하의 것)	좌 동	다. 수출물품 사용계획서... 1부 (우유수급조절용 제외) 라. 관할시. 도지사의 실수요자 및 소요량확인서..... 1부 (공업용 카제인 제조원료)
		0300		밀크(웨이틀 제외) 와 크림(분 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.5%를 초과하는것)	좌 동	1. 추천대상자 범위 및 구비서류 CCCN 0402-0100과 동일함
		0400		기타밀크(웨이틀 제외) 와 크 림	좌 동	1. 추천대상자. 가. 사료용은 사료관리법 제9 조 의 규정에 의거 배합사료(대 용유) 제조업 허가를 득한자. 나. 우유수급조절용은 축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가공협회 2. 추천범위 및 기준 사료 및 우유수급상 농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 3. 구비서류 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... 5부 나. 물품매도확약서사본... 1부 다. 수입물품 사용 계획서 (사료용) 1부
0403		0000		버 터	좌 동	1. 추천대상자 범위 및 구비서류 CCCN 0402-0100 동일함 1. 추천대상자 가.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나. 한국유가공협회 다. 집유기반이 있는 유업체로서 관관계법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.

CCCN		품 목 명	추천대상품목	추 천 기 준
0404	0102	치즈와 커어드 가공치이즈	좌 동	2. 추천범위 및 기준 농수산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 에 한함. 3. 구비서류 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... 5부 나. 물품매도 계약서 사본... 1부 다. 집유기반 확인서 ... 1부 (시·도지사) (유업체) CCCCN -0403-0000과동일함
	0101	기 타		
	0200	커 어 드		
2107	0500	육아용 조제분유	좌 동	1. 추천대상자 가. 육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자로서 관계법에 의하여 조제분 유 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 자. 2. 추천범위 및 기준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. 3. 구비서류 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 5부 나. 물품도매계약서 사본 1부 다. 육아용조제분유 생산시설 증명서(시·도지사) 1부 4. 페닐알라닌 성분을 제거한 특수조제분유(Phenylalanine Free Milk)의 수입 추천은 1, 2 및 3의 다의 추천요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처리기간: 2일 이내

- 부 칙 -

1. 이 공고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공고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추천 기관의
추천을 득한분은 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.
3. 국내의 경기동향,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요령상의
수입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.